

감 사 결 과 처 분 지 시 서

No. 2020-1					
소관부서	시행년도	행정상 조치 (처분요구)	재정상 조치		신분상 조치
			조치방법	금 액(원)	
○○○○처	2020년	시정	회수(2건)	1,000,000	주의(1명)
제 목 : 2019公社안전관리우수현장 추천 부적정					
○ 현 황 - ○○○○○처 ○○○○○○○○○부는 ○○○○○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현장을 2019 公社 안전관리우수현장으로 2019.11.18일 ○○○○단에 추천하였음 - ○○○○○○○○○현장은 ○○○○단 심사 결과 추천된 6개 현장 대상의 심사평가에서 공동2순위로 포상대상이 되어, 2019.12.31일에 업무담당자 2인이 사장 표창(公社 ○○○, 시공사 ○○○)과 포상금 100만원을 받음 ○ 위법부당내용 - ○○○○○○○○○부는 당 공사현장을 추천할 때 안전사고 증빙자료를 확인치 않고 임의로 해당 평가항목(환산재해율)에 만점을 부여하여 ○○○○단의 잘못된 심사를 유발시켰고 그 결과 담당자 2인이 부적절하게 포상을 받았음. - 이는 추천을 위한 자체 평가작업 시 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, 안전품질단 업무 방해와 공사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음 ○ 처분지시내용 : 시정요구 ① 2019公社안전관리현장으로 잘못 선정된 ○○○○○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현장 포상자 2인의 포상을 취소하고 포상금(각50만원)은 회수. ② ‘직원훈계 등 처분에 관한 세칙’ 제6조에 따라 ○○○○○○○○○부 ○○○○에게 “주의” 처분. [관련자] • ○○○○○처(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부) ○○○○급 ○○○○ - 주의 ③ 사업부서는 앞으로 현장의 안전사고 파악 업무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, 시공사에 “경고” 조치. [시공사] •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○ - 경고(기시행)					